



#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행정정보공개 청구건(G-17-00073) 정보공개결정 검토 보고

1. 관련근거

- 가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
- 나.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
- 다. 서울특별시 총무과-36465(2009.10.28.) 『행정정보공개 처리 개선방안』
- 라. 총무인사처-6656(2014.07.22.) 『2014년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

과 알림』

마. 총무지원처-1369(2017.03.08.) 『「2017년 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」 적극 협조 요청』

2. 위 호와 관련,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' 에 의거 행정정보공개 청구건(G-17-00073)에 대한 정보공개결정(공개여부)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청구내용

- 1) 청구인 : 하태영
- 2) 접수일자 : 2017.03.30.(목)
- 3) 접수번호 : G-17-00073
- 4) 청구내용 : 5호선 신길역 평, 단면도

나. 정보공개

- 1) 공개내용 : 5호선 신길역 평, 단면도
- 2) 공개여부 : **공개**
  - 공개사유 :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과 과제 작성을 위해 지하철 도면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함이 타당함
- 3) 공개방법 : 우편발송(사본·출력물)
- 4) 수수료 : **2,940원**
  - 산정내역 : 도면(A3) 6매(800원)/운송료(2,140원)
  - 산정근거 : 전자파일의 사본(종이출력물)/보통등기(규격, 중량100g이하)
  - ※ 사본 출력물 A3이상 300원, 1매 초과마다 100원
  - ※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음

다. 수수료 수입처리

- 1) 예산과목 : 영업외수익, 영업외수익, 잡이익
- 2)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97-05-046188(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)

- 붙임 1. 정보공개청구서 1부.  
 2.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.  
 3. 정보공개자료(도면) 1부. 끝.

대리 **조규영**

부장 **정천구**

처장 전결 03/30  
**박병준**

협조자

시행 건축처-1006 (2017.03.30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578 전송 02-6311-4284 / akisector@smrt.co.kr / 부분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